

2024. 9.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최승선 의원)

의 안 번 호	2024-78
------------	---------

발의연월일 : 2024. 9. .

발의자 : 최승선 의원

1. 제정이유

-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바.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사.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마.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불임자료

가. 조례제정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 법령 발췌서

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마. 타 시·군 조례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돋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

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양성·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의학적 상태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질병의 예방·건강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인력 지원)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양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조항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지원대상 인원과 지원범위·내용 확정 후 추계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강경림 팀장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치봉선플 품) 세계를 날다. 제26회 김제치원선축제 10. 2.(수) ~ 10. 6.(일)



김 제 시



수신 김제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전국김제055)

1. 의회사무국-3723(2024.8.20.)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2024A전국김제055) 1부. 끝.

가 족 복 지 과 장

주무관 김기용 가족정책팀장 김기용 기록부서장 김기용 2024. 8. 26.

첨조자

시정 가족복지과-21861 (2024. 8. 26.) 현수 비서사무국-3853 (2024. 8. 26.)

부 540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충장로 40, 1서명동, 김제시청 (서명동) / [https://www.gimje.go.kr](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30-540-6000 팩스번호 030-540-6009 / kooki@44@korea.kr / 대국민 공개

다시 뜨는 김제, 가을 맑은 도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4. 8. 19. ~ 2024. 8. 26.(5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3719호(2024.8.19.시행)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이견 없음. 끝.

지원관	장학윤	정책자원팀장	백성용	의정팀장	대결 2024. 8. 26.	의회사무국장	한결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3842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조례안명 :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9. ~ 2024. 8. 26.(5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학율	정책지원팀장	박성용	의정팀장	대길 2024. 8. 26.	의회사무국장	한경
법조자							
시행	의회사무국-3841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글 및 사진! 꿈을 수학하는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항 3항 생략)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년 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3.11.10 24.05.31 (일부개정)
전주시	○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24.07.09
군산시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3.05.01
익산시	○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3.09.27
정읍시		○		
남원시	○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3.12.18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 · 군 조례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제정) 2023.12.18 조례 제19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부모가 사망·이혼·가출 또는 부모를 포함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돋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또는 해당부서에 연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2023.09.27 조례 제24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돋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